



중국 환경법 위반시 처벌 규정 집

201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국 환경법 위반시 처벌규정집

2019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안 내

본 처벌규정집은 (I) 편에 《환경영향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환경보호법》, 《물오염 방지법》, 《고체폐기물 방지법》, 《대기오염 방지법》, 《토양오염 방지법》 내에 실린 처벌규정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II) 편에는 《환경감찰방법》, 《환경보호주관부문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일일연속처벌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차압·압수방법 실시》 등 총 4 개 부문의 문건들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한글 번역본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록된 중국 원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환경관실 -

목차

(I) 환경법과 처벌규정

1. 환경영향평가법	11
2.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15
3. 환경보호법	19
4. 물오염 방지법	25
5. 고체폐기물 방지법	35
6. 대기오염 방지법	43
7. 토양오염 방지법	57

(II) 환경감찰관련 규정

8. 환경감찰방법	67
9. 환경보호주관부문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방법 실시	77
10. 환경보호주관부문 일일연속처벌방법 실시	85
11. 환경보호주관부문 차압·압수방법 실시	93

부록 (중문)

1. 环境监察办法	105
2.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	115
3.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123
4.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132

(1)

환경법과 처벌규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1. 환경영향 평가법

환경영향 평가법

제 28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작성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경우	본 법의 제 32 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심사비준부문에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의 과실 혹은 독직죄를 저지르고 기준을 거치지 않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문건을 허가해준 경우	본 법의 제 34 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 29 조	
규획편제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허위 혹은 직무상 과실 등의 행위로 환경영향평가의 진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 30 조	
규획 심사비준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야 함에도 규획과 초안을 작성하지 않거나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률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법으로 승인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 31 조	
건설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보고표를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본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보고표를	본 프로젝트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현(縣)급 이상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건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법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제심사를 받지 않거나 환경영향 보고서와 보고표의 심의를 다시 요청한 상태에서 건설업체가 독단적으로 착공한 경우	총 투자액의 100 분의 1 이상, 100 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보고표가 기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기존 심사비 준부의 제심외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설업체가 독단적으로 착공한 경우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건설업체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등기표를 등록한 경우	현(縣)급 이상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는 서류에 등록할 것을 명하고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양공정건설 프로젝트 건설업체가 본 조항에 제시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 32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업무 중 무책임한 행위 혹은 허위행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자격에 대한 권한을 가진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가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회수하고 동시에 수납한 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33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대해 심사·심사 비준·등록의 책임이 있는 부서는 심사 비준등록 중에 비용을 받은 경우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책임지고 반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 혹은 기타 부처의 업무담당자가 사리사욕, 직권남용, 직무소홀 등의 이유로 위법으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2.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제 22 조	
건설업체가 본 조항을 위반한 상태로 건설프로젝트의 초보적인 설계를 편성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파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환경보호설비의 투자견적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환경보호설비의 구축을 시공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혹은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 소재지의 현(縣) 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기한을 정하여 개정명령을 내리고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기한 내 개정을 않을 시 20 만 위안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업체가 본 조항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가 건설과정과 동시에 환경영향보고서·환경영향평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심사부처에서 심사비준결정중 제기한 환경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 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처는 기한을 정하여 개정명령을 내리고,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만약 기한을 넘어서도 개정하지 않을 시 건설사업 중단을 명한다.
제 23 조	
건설업체가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환경보호설비를 하지 않거나, 검수수속을 받지 않거나 혹은 검수 후 불합격일시, 또한 건설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실시하거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혹은 환경보호설비를 검수 할 때 위조하였을 경우	현(縣) 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기한을 정하여 개정을 명하고,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기한 내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 10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업무에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인원은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할 경우	생산정지 및 사용금지를 명하고 혹은 인가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정부를 통하여 본 사업폐쇄를 명한다.

건설업체가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사회에 환경보호시설 검수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현(縣) 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사회에 공개를 명하고, 5 만 위안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공개한다.
제 24 조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기구가 건설업체,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받은 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꾸밀 경우	현(縣) 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는 받은 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권 남용·직무 소홀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만약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3. 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

제 59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벌금처벌을 받고 기한 내 개정을 명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개정 명령을 내린 다음 날부터 원(原) 벌금액에 따라 일일연속 누진제로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규정의 벌금처벌은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고,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원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실 또는 불법소득 등의 요인을 확정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60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생산 제한, 생산 중지·정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휴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 61 조	건설단위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허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설을 시작했을 경우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에서 건설 중지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 62 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오염물질을 배출한 단위가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개할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공개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공고를 낸다.

제 63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으나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1) 건설프로젝트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여 건설 중지를 명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한 경우 (2)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오염물질 배출 중지를 명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한 경우 (3) 지하도관 배수·수챗구멍, 관주(灌注) 혹은 검측데이터를 왜곡·위조,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등의 감시 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4) 국가가 생산·사용을 금지한 농약을 생산·사용하여 개정을 명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한 경우	관련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 혹은 기타 관련부문에서 안전을 공간기관에 송치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을 가한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형을 가한다.
제 64 조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침권(侵權) 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침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5 조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검측기구 및 환경검측설비와 오염방지설비의 유지보수·운영에 종사하는 기구가 환경서비스 활동 중에 허위로 날조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응당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발생시킨 기타 책임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縣)급 이상의	

<p>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이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p> <p>(1) 행정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행정 허가를 내린 경우</p> <p>(2) 환경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은폐 해준 경우</p> <p>(3) 법에 의거하여 응당 휴업, 폐쇄 명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을 내리지 않은 경우</p> <p>(4)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감시 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환경사고를 초래하는 행위 및 생태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태를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때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p> <p>(5)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사업단위와기타 생산 경영자의 시설·설비를 차압·압류한 경우</p> <p>(6) 검측데이터를 왜곡·위조하거나 왜곡·위조하도록 사주한 경우</p> <p>(7) 응당 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p> <p>(8) 징수한 오염물질배출비용을 횡령·점용(挤占)하거나 다른 용도로 씀진 경우</p> <p>(9)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불법행위</p>	<p>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에 대해 과실기록·중과실(重過失)기록 또는 직급 강등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한 주요책임자는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p>
<p>제 69 조</p> <p>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p>	<p>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p>



4. 물 오염 방지법

물 오염 방지법

제 80 조	
<p>환경보호주관부문이나 기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허가를 하거나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발견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조사·처리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기타 본 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책을 이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p>	<p>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p>
제 81 조	
<p>연기·분쇄·체류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 주관부문 혹은 기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의 감사를 거절하고 방해할 경우 혹은 감사를 받을 때 사실을 조작할 경우</p>	<p>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기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제 82 조	
<p>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p> <p>(1)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배출한 물 오염물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측한 경우, 또는 원래 검측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2)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물 오염물질 자동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한 경우, 혹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연계한 감시제어설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모니터링설비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p>	<p>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생산 중지를 명한다.</p>

<p>(3)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유해한 물 오염물질의 오염 배출구와 주변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유해한 물 오염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p>	
제 83 조	
<p>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p> <p>(1) 법에 의거하지 않고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 물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2) 물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 물 오염물질배출총량 규제지표를 초과하여 물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3) 간이 침투정(滲井), 배수 구멍(滲坑), 틈새(裂隙) 및 중유동(溶洞)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왜곡·위조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물 오염방지시설 등 감독 관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물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4)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사전 처리를 진행하고, 오수집중처리시설에서 처리기술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공업폐수를 배출한 경우</p>	<p>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명한다. 아울러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받고, 영업정지·폐쇄를 명한다.</p>
제 84 조	
<p>식수원 보호구역내에 오염물질 배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p>	<p>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한 내 철거하도록 명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지정기한 만료 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p>	<p>강제 철거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하며 5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생산 중지 후 정리를 명령할 수 있다.</p>

상기 조항 외에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배출구를 설치했을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기한 내 철거하도록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한 만료 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하며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생산 중지 후 정리를 명령 할 수 있다.
수질행정 주관부문이나 유역관리기구의 허가 없이 하천, 호수에 배출구를 신설·재건·증축하였을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수질행정 주관부문이나 유역관리기관은 직권과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조취를 취하고 처벌한다.
제 85 조	
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중지시키고, 기한 내 처리조치를 취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을 명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한 만료 후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지정하고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
(1) 수역에 유류(油类), 산성 액체, 알칼리성 액체를 배출한 경우	
(2) 수역에 맹독성 폐기 액체나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인 등을 함유한 수용성 유독 잔재를 배출, 투기 또는 직접 매립한 경우	
(3) 수역에서 유류(油类), 유독성 오염물질을 저장했던 차량이나 용기를 세척한 경우	

(4) 수역에 공업폐기물 잔재, 도시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을 배출, 투기하거나 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의 최고수위선보다 낮은 깎비, 간석지 등에 고체폐기물 또는 기타 오염물질을 퇴적 또는 저장한 경우	상기 조항 중 제(3), (4), (6), (7), (8)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조항 중 제(1), (2), (5), (9)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받고, 영업 정지·폐쇄를 명한다.	
(5) 수역에 방사성 고체폐기물이나 고(高)방사성, 중(中)방사성 폐수를 배출 또는 투기한 경우		
(6) 국가의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수역에 저(低)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 온 폐수 또는 병원체를 함유한 오수를 배출한 경우		
(7) 누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정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8) 주유소 등의 지하 오일 탱크에 이중 밀폐 탱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누출 방지 등 기타 효율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누출 방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9)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방호적인 조취를 취하거나 누출 방지 조치가 없는 수로, 저수지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유독성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 및 병원체를 함유한 폐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저장한 경우		
제 86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수입 혹은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한 심각한 수질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설비명부의 해당 설비를 끼워 넣어 사용한 경우 혹은 차용 금지한 심각한 수질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술명부의 해당 기술을 차용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 종합 및 거시적 조정 주관부문에서 시정을 명하고, 5 위안 이상 2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 종합 및 거시적 조정 주관부문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본(本)급 인민정부에 요청하여 영업 정지·폐쇄를 명한다.

<p>제 87 조</p> <p>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산업정책에 어긋나는 소형제지, 제혁, 날염, 염색, 코크스, 유황 정제, 비소 정제, 수은 정제, 석유 정제, 전기도장, 농약, 석면, 시멘트, 유리, 강철, 화력발전소 및 기타 수질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였을 경우</p>	<p>소재지의 시(市), 현(縣) 인민정부는 이를 폐쇄할 것을 명한다.</p>
<p>제 88 조</p> <p>선박이 상응하는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수역환경 오염방지 증서 및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p>	<p>해사관리기구, 어업주관부문을 직책 업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지정기한 만료 후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p>	<p>환경보호 주관부문을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지정하고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p>
<p>제 89 조</p> <p>선박이 상응하는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수역환경 오염방지 증서 및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p>	<p>해사관리기구, 어업주관부문을 직책 업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지정기한 만료 후 시정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p>	<p>임시 운항정지를 명한다.</p>
<p>선박이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조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p>	<p>해사관리기구, 어업주관부문을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시정을 명하고, 2,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 90 조</p> <p>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p>	

<p>(1) 수역에 선박 쓰레기를 버리거나 혹은 선박의 잔유(殘油), 폐유를 배출한 경우</p> <p>(2) 작업지의 해사관리기구 허가 없이 선박을 이용하여 벌크(散裝)포장한 액체오염위해성 화물의 라이터링(Lightering·過駁)작업을 진행한 경우</p> <p>(3) 선박 및 관련 작업업체가 오염위험이 있는 작업 활동에 종사한 경우,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오염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p> <p>(4) 충탄(沖灘) 방식으로 선박 해체를 진행한 경우</p> <p>(5) 중화인민공화국내 강에 진입한 국제선 선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의 밸러스트 수(壓載水·Ballast water)를 배출한 경우</p>	<p>해사관리기구, 어업주관부문을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 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기간 내에 처리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간 내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사관리기구, 어업주관부문을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처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법 선박이 부담한다.</p>
<p>제 91 조</p> <p>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p> <p>(1) 식수원 1급 보호구역내에 급수시설과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프로젝트를 신설·재건·증축한 경우.</p> <p>(2) 식수원 2급 보호구역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설·재건·증축한 경우.</p> <p>(3) 식수원 필수 보호구역내에서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설·재건·증축하거나 건설 프로젝트 재건 시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p>	<p>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받고, 철거 혹은 폐쇄를 명한다.</p>
<p>식수원 1급 보호구역내에서 가두리 양식이나 관광, 낚시 또는 기타 식수 수질을 오염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p>	<p>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제 92 조	
식수급수업체의 식수 수질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시(市), 현(縣)급 인민정부의 급수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 받고, 영업정지·정리를 명할 수 있다. 직접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93 조	
산업체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1) 해당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물 오염사고의 응급 방안을 제정한 경우 (2) 물 오염사고 발생 후, 즉시 물 오염사고의 응급 방안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에 관련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4 조	
기업·사업기관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물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이 본 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처리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없애도록 명한다.
요건에 따라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처리능력을 갖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 중대한 물 오염사고는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폐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타 책임자는 지난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제 63 조 규정의 위법 물 오염물배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집적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을 명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일반적이거나 비교적 큰 물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물 오염사고에 따른 직접 손실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물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물 오염사고에 따른 직접 손실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95 조	
기업·사업기관 기타생산업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물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처벌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불법 물 오염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거나 재검사를 거절·방해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한다.
제 101 조	
본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다.



**5.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 67 조	
<p>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감독 관리부문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p> <p>(1) 법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 허가를 하거나 허가문서를 처리한 경우</p> <p>(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p> <p>(3)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p>	<p>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문에서 수정을 명한다.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p>
제 68 조	
<p>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p> <p>(1) 국가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공업 고체폐기물을 보고하여 등록하거나 보고하여 등록할 때 허위로 날조한 경우</p> <p>(2)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안전하게 분류, 보관하는 보관시설·장소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무공해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3) 기간 내 도태해야하는 명부에 포함된 도태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p>	<p>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문에서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간 내 수정을 명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조항의 (1), (8)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5,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의 (2), (3), (4), (5), (6), (7)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방치, 철거한 경우</p> <p>(5) 자연보호구역, 풍경명승지, 식수원보호구역, 기본농경지보호구역과 기타 특별보호구역내에 공업 고체폐기물 집중저장·처리 시설·장소와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경우</p> <p>(6) 고체폐기물을 독단적으로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밖으로 이동하여 저장, 처리한 경우</p> <p>(7) 상응하는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 고체폐기물의 분산, 유실, 누출 방지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p> <p>(8) 운송과정 중 길가에 공업고체폐기물을 방기(丢弃), 흘려버린 경우</p>	
제 69 조		
<p>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체폐기물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검수 받지 않고, 혹은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체공정이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되는 경우</p>		<p>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비준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고,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제 70 조		
<p>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 관리부문의 현장검사를 거절할 경우</p>		<p>현장검사 집행부문에서 기간 내 수정을 명한다. 수정을 거부하거나 검사 허위로 날조한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 71 조		
<p>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가축의 분뇨를 수거·저장·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p>		<p>현(縣)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제 7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태한 설비를 생산·판매·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도태된 생산 기술을 채용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 부서는 수정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 부문에서 의견을 건의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영업 정지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
제 73 조	
미광(尾鑛), 버력, 폐식 등 광업 고체폐기물저장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가 관련 환경보호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저장 시설의 폐쇄를 진행한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에서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5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4 조	
본 법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 (1) 생활쓰레기를 아무데나 무단투기를 하고, 뿌리고, 쌓아둔 경우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한 경우 (3) 건설시공업체가 시공 과정 중 발생한 고체 폐기물을 제때 깨끗이 씻어 운송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4) 건설시공업체가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시공 과정 중 발생한 고체 폐기물에 대해 이용 또는 처리를 진행한 경우 (5) 운송과정 중 길가에 공업고체폐기물을 방기(丟棄), 흘려버린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와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벌금형을 부과한다. 업체가 상기 조항의 (1), (3), (5)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5,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의 (2), (4)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상기 조항의 (1), (5)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2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5 조	
본 법의 위험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제 72 조		
하나를 행할 경우 (1) 위험폐기물의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국가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 폐기물을 보고하여 등록하거나, 보고하여 등록할 때 허위로 날조한 경우 (3)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 방치, 철거한 경우 (4) 국가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납부한 경우 (5) 위험폐기물을 경영 허가증이 없는 회사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영업활동에 종사한 경우 (6) 국가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폐기물 이동절취전표에 기입하거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위험 폐기물을 옮긴 경우. (7)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저장한 경우 (8) 위험 폐기물을 안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상호간 부적합한 성질을 갖는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거·저장·운송 또는 처리한 경우. (9)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운반한 경우 (10) 오염제거 처리를 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거·저장·운송·처리하는 장소, 시설, 설비와 용기, 포장재료 및 기타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1) 상응하는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 고체폐기물의 분산, 유실, 누출 방지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12) 운송과정 중 길가에 공업고체폐기물을 방기(丟棄), 흘려버린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중지와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조항의 (1), (2), (7), (8), (9), (10), (11), (12), (13)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의 (3), (5), (6)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2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의 (4) 행위를 행할 경우 기간 내 납부하고,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응당 납부해야 할 위험폐기물 오염물질배출비용에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제 73 조		
미광(尾鑛), 버력, 폐식 등 광업 고체폐기물저장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가 관련 환경보호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저장 시설의 폐쇄를 진행한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에서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5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4 조		
본 법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 (1) 생활쓰레기를 아무데나 무단투기를 하고, 뿌리고, 쌓아둔 경우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한 경우 (3) 건설시공업체가 시공 과정 중 발생한 고체 폐기물을 제때 깨끗이 씻어 운송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4) 건설시공업체가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시공 과정 중 발생한 고체 폐기물에 대해 이용 또는 처리를 진행한 경우 (5) 운송과정 중 길가에 공업고체폐기물을 방기(丟棄), 흘려버린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와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벌금형을 부과한다. 업체가 상기 조항의 (1), (3), (5)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5,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의 (2), (4)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상기 조항의 (1), (5)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2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5 조		
본 법의 위험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13) 위험폐기물 돌발사고 방지조치나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제 76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 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사람이 발생시킨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법에 의거하여 응답 부담해야 하는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대리처리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7 조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수거·저장·이용·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증지를 명하고, 법을 위반하여 얻은 모든 소득을 몰수한다. 아울러 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상기 조항에 기재된 활동에 종사한 경우, 증서 발급기관에서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 78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경내로 반입하여 무단 투기하거나 쌓아놓고, 처리한 경우, 수입이 금지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세관에서 그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명하고, 100,000 위안 이상 1,0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수입자가 불분명 할 경우, 그 고체폐기물을 운송한 자가 고체 폐기물의 반송을 책임지거나 고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세관의 감독을 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경내로 반입하고, 이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 79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거쳐 위험폐기물을 옮긴 경우	세관에서 그 위험폐기물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80 조	
불법으로 국경 내에 반입한 고체폐기물의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처리의견을 건의하고, 세관은 응답 본 법 제 78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수입자에게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한다.
제 81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기간 내 처리를 명한다. 지정 기간 내에 처리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에서 영업 중지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
제 8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2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직접적으로 손실된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되 1,000,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
제 83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을 수거·저장·이용·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6. 대기오염 방지법

대기오염 방지법

제 98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현장 진입 거부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위탁을 받은 환경감찰기구 또는 기타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 책임부서의 검사감독에 불응하거나 감독을 실시할 때 허위를 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 또는 기타 소관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 책임부서는 개선을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9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총량규제지표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 감독관리를 회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 명령 또는 생산 제한, 생산 중지, 복원을 명령하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기준을 받아 중지, 폐업을 명한다.
제 100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대기환경질량 측정관측설비 또는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측정설비를 불법으로 점유, 훼손 또는 임의로 이동한 경우 (2) 배출하는 공업폐기가스 및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에 대한 측정관리를 규정에 따	

라 이행하지 않고 측정기록 원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측정설비를 규정에 따라 설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관리감독설비를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로 연결하지 않고 측정설비를 정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 (4) 중점오염물배출업체가 자동측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공개하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대기오염물 배출구를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제 101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산업정책목록에서 금지한 설비와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 사용하거나 국가의 종합적인 산업정책목록에서 금지한 가공작업을 도입하거나 도태된 설비와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종합 주관부문과 입국 검사 검역 기구는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다.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보고하고 기준을 받아 영업정지, 폐업을 명한다. 수입행위가 밀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탄광에 석탄 세척시설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에너지자원 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기준을 받아 영업 정지, 폐업을 명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과 비소 등 유독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포함된 석탄을 채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폐업을 명한다.

<p>제 103 조</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p> <p>(1)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코크스를 판매하는 경우</p> <p>(2) 함량이 품질기준 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휘발성 유기물을 함유한 원자재와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p> <p>(3)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선박, 비도로 이동기계용 연료, 엔진오일, 질소산화물 환원제, 연료와 윤활유 첨가제 및 기타 첨가제를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p> <p>(4) 연소금지구역 내에서 고오염연료를 판매하는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 명령을 내리고 원자재, 제품, 불법수입을 몰수하며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 104 조</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p> <p>(1)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코크스를 수입하는 경우</p> <p>(2) 품질기준 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한 원자재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p> <p>(3)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선박, 비도로 이동기계용 연료, 엔진오일, 질소산화물 환원제, 연료와 윤활유 첨가제 및 기타 첨가제를 수입하는 경우</p>	<p>출입국 검사 검역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자재, 제품,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p>
<p>제 105 조</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업체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 106 조</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용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p>	<p>해사관리기구, 어업주관부문이 직책에 따라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 107 조</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연소금지구역 내에서 고오염 연료시설을 신축, 확장하거나 규정에 따라 고오염연료 사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중앙난방 공급망이 설치된 구역에서 분산형 석탄난방보일러(分散燃煤供热锅炉)를 신축, 확장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석탄난방보일러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p>	<p>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고오염연료시설을 몰수하고, 석탄난방보일러를 철거한다.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기준 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보일러를 생산, 수입, 판매, 사용하는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 108 조</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휘발성유기물을 포함하고 폐기가스를 초래하는 생산, 서비스 활동을 밀폐된 공간 또는 설비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오염방지설비를 규정에 따라 설치,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가스 절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2) 공업도장기업이 휘발성유기물 함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3) 석유, 화학공업 및 기타 유기용제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이 수송관로와 설비에 대해 일상적인 유지보호, 수리를 실시하지 않고 물질의 누출 절감하지 않았거나 누출된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수집</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p>

<p>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p> <p>(4) 석유 및 가스 저장소, 석유·가스 충전소, 유조차, 가스탱크차 등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천연오일가스 회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p> <p>(5)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석유, 화학공업, 제약, 광물 채굴 기업이 집중수집처리, 밀폐, 주위차단, 덮개, 청소, 살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진과 기체상 오염물의 배출을 규제하거나 절감하지 않은 경우</p> <p>(6) 공업 생산, 쓰레기 매립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회수 처리하지 않고 회수 처리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오염방지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연성가스의 회수 처리설비를 정상 가동하지 않고 즉시 수리 개선하지 않은 경우</p>	
제 109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생산하는 경우</p>	<p>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오염물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고 폐기한다.</p>
<p>시정을 거부할 경우</p>	<p>생산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 국무원 자동차 생산주관부문은 해당 자동차 차종의 생산정지를 명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의 생산기업이 엔진과 오염방지장치를 허위로 조작하고 불량품을 허위로 배출검사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p>	<p>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염물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고 폐기한다. 국무원 자동차 생산주관부문은 해당 자동차 차종의 생산정지를 명한다.</p>

제 110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문,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직책에 따라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 오염물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고 폐기한다.</p>
<p>수입행위가 밀수에 해당하는 경우</p>	<p>해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한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가 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p>	<p>판매자는 수리수선, 교체, 반품을 실시해야 한다.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p>
제 111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생산·수입업체가 규정에 따라 사회에 생산·수입 자동차 차종의 배출검사정보 또는 오염방지기술정보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p>	<p>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생산·수입업체가 사회에 생산·수입자동차 차종과 관련된 유지보수기술정보를 규정에 따라 공지하지 않은 경우</p>	<p>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제 112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의 배출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배출검사보고서를 발급한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인증 담당부서는 검사자격을 취소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의 배출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배출검사보고서를 발급한 경우</p>	<p>해사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임시로 변경 교체하고 허위로 조작하여 자동차 배출검사를 통과시키거나 자동차의 차량용 배출진단 시스템을 훼손시킨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해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 한 대당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p>
제 113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배출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p>	<p>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p>
제 114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배출 기준을 불합격한 비도로 이동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중장비 디젤차량, 비도로이동기계를 규정에 따라 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고(오염)배출 비도로이동기계의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고배출 비도로 이동기계를 이용한 경우</p>	<p>도시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p>
제 115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공업체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시공업체가 주위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덮개, 단계별 작업, 시간선택제 시공, 살수를 통한 먼지 규제, 지면 및 차량 세척 등 효과적인 먼지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2) 건축토목, 건축공정 폐기물, 건축쓰레기를 즉시 운반하지 않았거나 밀폐식 먼지방지 덮개를 하지 않은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등 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업체가 일시</p>	

<p>적으로 건설작업이 불가능한 건설부지의 노출지면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3 개월을 초과하여 건설작업이 불가능한 건설부지의 노출지면에 대해 녹화, 포장,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등 주관부서는 전항(前項)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p>
제 116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석탄, 쓰레기, 잔토, 모래자갈, 토목공사, 시멘트 모르타르(회반죽) 등 미포장의 흐르는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 밀폐 혹은 기타 물질의 유실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p>
제 117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p> <p>(1) 석탄, 맥간석(저질탄), 석탄 잔재물(煤渣), 석탄재, 시멘트, 석회, 석고, 모래흙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물질을 밀폐하지 않은 경우</p> <p>(2) 밀폐할 수 없고 비산먼지가 쉽게 발생하는 물질에 대해 주변에 적재물 보다 높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덮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3) 물질을 하역할 때 밀폐·분무 등 방식을 취해 비산먼지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p> <p>(4) 석탄, 맥간석(저질탄), 석탄 잔재물(煤渣), 석탄재 등 물질을 보관할 때 연소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5) 부두, 광산, 매립장, 쓰레기 수집처리장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6) 유독유해 대기오염물목록에 열거</p>	<p>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또는 영업정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p>

<p>된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이 규정에 따라 환경위험 경보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배출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환경안전의 잠재위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7) 대기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 및 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업체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 배출을 감소하는데 효율적인 기술방법과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정화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p> <p>(8) 악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제 118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름연기를 배출하는 요식서비스업 경영자가 기름연기 정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름연기 정화장치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기름연기 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 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주민거주주택에 연기전용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은 주상복합건물과 주상복합건물 내 거주 층과 서로 인접한 상업 층에서 기름연기, 특이한 냄새, 폐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요식서비스업의 신설, 개조, 확장한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 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폐업 처분과 함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인민정부가 금지한 기간과 구역 내에서 식품을 야외에서 소각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 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각 도구와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5백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제 119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구집중지역에서 수목, 화초에 대해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거나 농작물줄기, 낙엽 등 연기와 먼지 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 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백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구집중구역과 기타 법적으로 특별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서 아스팔트, 아스팔트 펠트(felt, 섬유제품에 아스팔트 가공을 한 방수지), 고무, 플라스틱, 피혁, 쓰레기 및 기타 유독유해 분진과 연기,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 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5백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인민정부가 금지한 기간과 구역 내에서 폭죽을 터뜨릴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 부문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p>
제 120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의류 드라이클리닝과 자동차 수리 등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면서 특이한 냄새와 폐기가스의 처리장치 등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 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2천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p>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사회에 중대 대기오염 정보를 발령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p>	<p>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p>
제 121 조	
<p>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장의 토목·석재공사와 건축물 해체시공 중지 등 중대 대기오염 비상대응조치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p>	<p>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 부문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제 122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 부문은 본 조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전년도 기업·사업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 또는 비교적 큰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기오염사고로 인해 초래된 직접 손실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기오염사고로 인해 초래된 직접 손실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23 조	
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2)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대기오염물의 배출총량규제지표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3) 감독 관리를 회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4) 건축공사 또는 비산면지가 쉽게 발생하는 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할 시 효과적인 비산면지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지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일의 다음 날부터 원래 벌금에 의거하여 연속으로 처벌(일수별 벌금가중) 할 수 있다.
제 124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변경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복을 할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5 조	
대기오염물 배출로 인해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6 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 기타 대기환경보호 관리감독 책무를 가진 부서과 해당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욕·불법수수, 허위·위조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 127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토양
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제 85 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이행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가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내리지 않은 경우	상급 주관부문이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86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토양오염 중점관리 업체가 자동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생태환경주관 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책임지고 시정을 명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거절한 경우 생산정지 명령을 내리고 처벌한다. 좌측의 규정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前項) 규정의 제 (2), (4), (5)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2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토양오염중점 감독관리 업체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허위로 위조한 경우	
(3) 토양오염중점 감독관리 업체가 매년 유독유해물질 배출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토양오염 위험조짐 조사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장비 또는 구조물, 건축물을 철거할 때 기업이 토양오염방지요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토양오염중점관리 기업이 토양오염방지 업무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폐석(廢石) 저장탱크의 운영 및 관리 업체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6) 폐석(廢石) 저장탱크의 운영 및 관리 업체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오수집중처리시설, 고체폐기물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법률규정과 해당기준의 요건에 의거하지 않고 토양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 87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경지에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한 오수, 침전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토사 침전물(清淤底泥), 폐석(廢石) 등을 배출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을 공안기관에 송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제 88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업생산재료 생산업자, 판매자, 사용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비료 등 농업생산재료의 포장폐기물 혹은 농업용 필름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농약포장폐기물을 즉시 회수하여 전문기구 혹은 조직에 맡겨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9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금속 혹은 기준을 초과하는 유독유해 물질을 함유한 공업고체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혹은 오염 토양을 간척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제 90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와 토양오염위험평가, 위험관계 효과평가, 복구효과평가 등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의 위탁을 받고 허위로 조사보고, 위험평가보고, 위험관계효과평가, 복구효과평가보고를 작성한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이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위에 기록한 업무의 진행을 금지하고 5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업체가 허위로 보고를 작성한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10 년 내 전항 규정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기구가 죄를 범한 경우 평생 전항 규정의 업무를 실시 할 수 없다.
본 조항 제 1 조규정의 업체와 위탁인이 악의로 결탁하고 허위로 보고를 작성하여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위탁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다.
제 91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발건설 중 깎인 표토를 단독으로 수집하고 저장하지 않은 경우 (2) 토양, 주변환경에 발생한 새로운 오염에 대해 위험관계, 복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오염토양 운송 시, 운송시간, 방식, 노선, 오염토양의 수, 행방, 최종처리조치 등을 사전에 소재지와 인계지역의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위험평가보고에서 정한 토양오염위험관계, 복구 목표에 달성하지 않은 건설용지는 건설·위험관계, 복구와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제 9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규정에 따라 후기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3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피검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혹은 검사를 받는 동안 허위 행위를 행할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제 94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이행할 경우 (1)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위험관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복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위험관계, 복구업무 완료 후 관련업체에 따로 위탁하여 위험관계효과, 복구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요한 모든 비용은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전항(前項)의 제(3), (4) 항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은 안건을 공안기관에 송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p>제 95 조</p> <p>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토양오염중점관리업체가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방지 업무방안을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p> <p>(2)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규정에 따라 복구방안, 효과평가보고를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농업, 임업초원 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p> <p>(3) 토지사용권자가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상황조사보고를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p>	<p>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 96 조</p>	
<p>오염토양으로 인해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p>	<p>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p>
<p>토양오염책임자를 정할 수 없고 토지사용권자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p>	<p>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p>
<p>토양오염으로 인해 권리침해분쟁이 발생한 경우</p>	<p>당사자는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등 주관 부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 98 조</p>	
<p>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치안관리 행위를 행하는 경우</p>	<p>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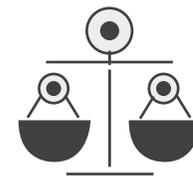
(II)

환경감찰관련 규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8. 환경감찰방법



환경감찰방법

《환경감찰방법》은 2012년 7월 4일 환경보호부 부서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부장

2012년 7월 25일

키워드: 친환경 법규 환경감찰 방법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감찰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하기 위해 환경감찰대를 구성하고 환경감찰효능을 제고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환경감찰 업무사실을 결합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환경감찰이란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환경보호법률, 법규, 규정, 기타규범성 문건에 의거하여 행정집행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 3 조

환경감찰은 아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1) 교육과 징계의 결합

- (2) 엄격한 집행과 자발적인 준법의식의 결합
- (3) 확실한 증거, 합법적인 절차, 범죄에 대한 정확한 성질규정, 합당한 처리
- (4) 공정함, 공개적, 고효율

제 4 조

환경보호부는 전국 환경점검업무에 있어 통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모니터링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속한 환경감찰기구(이하 환경감찰기구로 칭함)는 환경감찰 업무를 구체화한다.

제 5 조

환경감찰기구는 본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대해 책임지고 상급 환경감찰기구의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받는다.

각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감찰기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완벽한 업무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 6 조

환경감찰기구의 주요임무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 (1) 환경보호법률, 법규, 규정, 기타 규범성 문건의 집행을 관리 감독한다.
- (2) 오염원의 오염물 배출상황, 오염방지시설의 운행상황, 환경보호 행정허가 집행상황,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법률법규 집행 상황 등 현장에서 관리 감독한다.
- (3) 자연보호구, 가축장의 오염방지 등 생태와 농촌환경보호에 대한 법률법규 집행상황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점검한다.
- (4) 오염물배출 등록신고, 오염물 배출비용의 징수와 승인에 대해 구체화한다.
- (5) 환경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 (6)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에 대한 소송, 신고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고 감독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정한 직책과 분업에 의거하여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에

대한 분쟁을 중재 처리한다.

- (7) 돌발환경사고에 대한 긴급처리에 참여한다.
- (8)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문제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 (9) 직책에 의거하여 환경검열업무를 구체화한다.
- (10) 법률, 법규, 규정, 기타 규범성 문건규정의 기타 직책

제 2 장 환경감찰기구와 인원

제 7 조

각급 환경감찰기구는 환경감찰국으로 칭할 수 있다. 성급, 시급, 현급 환경감찰기구는 각각 환경감찰총대(总队), 환경감찰지대(支队), 환경감찰대대(大队)로 칭할 수 있다.

현급 환경감찰기구의 파견기구와 향진(乡镇, 지방도시)급 환경감찰기구의 명칭은 환경감찰중대 혹은 환경감찰소로 칭할 수 있다.

제 8 조

환경감찰기구의 설치와 인원구성은 해당 행정구역범위의 크기, 경제사회발전수준, 인구규모, 오염원의 수와 분포, 생태보호 및 환경법 집행 횟수 등 요소에 따라 과학적으로 정한다.

제 9 조

환경감찰기구의 업무비용은 국가관련 규정에 기록된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예산에 따라 본급 재정부에서 보장한다.

제 10 조

환경감찰기구의 사무실, 법 집행 업무용 공간, 법 집행용 차량, 증거조사 기자재

등 법 집행을 위한 장비들은 국가 환경감찰기준화건설과 검수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감찰기구의 법 집행용 차량은 동일한 환경감찰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환경감찰기구의 직원(이하 환경감찰기구인원으로 칭함) 채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업무요구에 따라 환경감찰 5년훈련규획과 연도계획을 제정하고 분류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시급, 현급 환경감찰기구의 주요책임자와 성급 이상의 환경감찰인원의 직책훈련은 환경보호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기타 환경감찰인원의 직책훈련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실시한다.

환경감찰인원의 훈련 참여를 환경감찰인원의 심사, 임직의 주요한 근거로 여긴다.

제 13 조

현장 법 집행업무에 참여하는 환경감찰인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 (1) 관련장소에서 실지조사, 샘플채취, 모니터링, 촬영, 녹음, 녹화, 기록작성을 실시할 수 있다.
- (2) 해당 자료를 검열, 복사할 수 있다.
- (3) 관련 직원에 대한 회견과 문의,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4) 위법행위에 대해 정지 혹은 교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5) 행정처벌의 약식질차를 적용시켜 현장에서 행정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 (6)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조치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현장 법 집행업무에 참여하는 환경감찰인원은 최소 2 명이다.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执法证)》 등 행정 법 집행증서에 제시된 것처럼

신분을 밝히고 법 집행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제 14 조

현장 법 집행업무에 참여하는 환경감찰인원은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执法证)》을 소지해야 한다.

직책훈련에서 시험을 통과해 훈련합격증을 얻은 환경감찰 인원은 심사비준을 거친 후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执法证)》을 반포한다.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执法证)》의 구체적인 반포, 사용, 관리방법은 환경보호부에서 각각 제정한다.

제 15 조

각급 환경감찰기구는 완벽한 보안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보안조치를 완비한다. 보안책임을 실시하고 보안관리 전문가를 지정한다.

제 16 조 환경감찰인원은 청렴한 정치를 위한 규율과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완벽한 환경감찰인원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이룬 환경감찰인원에게는 장려하고 표창을 내린다. 환경감찰 업무 중 규율을 어긴 환경감찰인원에게는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执法证)》을 감점하고 회수할 수 있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송치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3 장 환경감찰업무

제 18 조

환경감찰기구는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보호업무의 임무, 오염원 수, 유형, 관리권한 등에 의거하여 환경감찰업무 연도계획을 수립한다.

환경감찰업무 연도계획을 동급 환경보고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실시한다. 1 급 환경감찰기구에 사본을 보낸다.

제 19 조

환경감찰기구는 환경감찰업무 연도계획에 의거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관례조사 혹은 중점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 20 조

오염물 배출자가 신청한 오염물 배출 종류, 수에 대하여 환경감찰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책임지고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 21 조

환경감찰기구는 오염물배출 비용징수기준과 조사하여 결정한 오염물 배출 종류, 수에 의거하여 오염물 배출자에게 오염물 배출 비용을 징수한다.

오염물 배출 비용의 감세·면세·납부유예 신청에 대해 환경감찰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 22 조

환경보호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위법행위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23 조

환경보호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중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위법안전에 대해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명확한 요건을 제시하여 관련 부문이 기한 내에 일을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사회에 처리결과를 공

개한다.

제 24 조

환경감찰기구책임자는 환경행정 법 집행 후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행정 처벌,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임무 혹은 중대한 환경돌발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환경감독 검사기구는 하급 지방인민정부 책임자와 회담을 가질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에게 법에 의거하여 직책이행, 시정조치실시, 개선업무의 건의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6 조

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해당 기관관할에 속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규정의 기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 관할에 속하고 해당 기관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처리한 안건은 관할 권한이 있는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송치하여 처리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처리한 안건은 관할 권한이 있는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송치하여 처리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하고 업무요구에 따라 기타 부문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법 집행을 실시한다.

제 27 조

인접한 행정구역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서로 환경감찰 법 집행 정보를 통보하고 교류, 협조협력을 강화한다.

동일한 구역, 유역 내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연합조사와 법 집행활동을 실시한다.

환경감찰기구는 정보통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보고, 정기적인 보고, 통계보고서 형식으로 동급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상급 환경감찰기구에 해당 행정구역의 환

경감찰업무상황을 보고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환경감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28 조

상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하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의 환경감찰업무 중 직책이행, 직권행사, 규율준수 상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제 29 조 환경감찰업무 중 실시한 오염원감찰, 건설프로젝트 검사, 오염물배출 등기신청, 오염물 배출 비용징수, 행정처벌 등 자료는 즉시 처리해야 하고 분류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 30 조 상급 환경감찰기구는 1 급 아래 환경보호주관부문의 환경감찰업무에 대해 연도심사를 진행한다.

제 4 장 부칙

제 31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속한 기타 부문은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정한 직책분업에 의거하고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직책범위 내의 환경감찰업무를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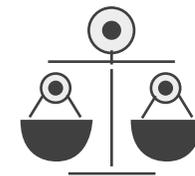
제 32 조

본 방법은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설명한다.

제 33 조

본 방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환경감리업무잠정조치》([91] 环监字 제 338 호), 《환경감리업무제도(시행)》(环监[1996] 888 호), 《환경감리업무절차(시행)》(环监[1996] 888 호), 《환경감리정부공개제도》(环发[1999] 15 호)를 동시 폐지한다.

9. 환경보호주관부문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방법 실시》는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서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주생현 (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조치를 규범하고 실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오염물 배출기준 혹은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규제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이하 오염물배출자라고 칭함)에 대해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본 방법을 적용시킨다.

제 3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결정을 내릴 시 오염물배출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기한 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4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를 실시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결정, 생산제한 연기상황, 생산제한 및 생산정지처리 해제 날짜 등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적용범위

제 5 조

오염물배출자가 오염물 배출기준 혹은 중점 오염물 하루 최고허용 배출총량 규제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정지처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하도관, 수챗구멍, 주입 혹은 왜곡을 통해 모니터링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오염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오염물 배출의 감독관리 방식을 회피하고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 중금속, 영구성 유기오염물 등 환경과 인체건강을 해치는 오염물 배출이 오염물 배출기준을 3 배이상 초과하는 경우
- (3)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연도 규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 (4) 생산제한 명령을 받은 후에도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 (5) 돌발사고로 인해 오염물 배출기준 혹은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규제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 (6)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정황

제 7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오염물 배출기준 혹은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련 환경보호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생산정지처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1) 도시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위험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 운영기관
- (2) 생산업자의 업무가 기본민생, 공공이익과 관련된 경우
- (3) 생산정지처리의 실시가 생산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제 8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영업정지, 폐쇄를 명령한다.

- (1) 2년 내에 중금속, 유기오염물 등 유독유해물질에 함유한 오염물 배출이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2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앞의 행위를 다시 행한 경우
- (2) 생산정지처리 명령을 받은 후, 생산정지를 거부하거나 독단적으로 생산을 다시 시작한 경우
- (3) 생산정지결정 해제 후, 추적검사 중 동일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 (4) 법률법규규정의 기타 중대한 환경위법상황

제 3 장 실시절차

제 9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결정을 내리기 전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의 증거에는 현장조사기록, 조사문의기록, 환경모니터링보고, 시청자료, 증인의 증언, 기타 증명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결정을 내리기 전 서면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 책임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의 안전심의위원회기관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결정을 내리기 전 오염물배출자에게 관련사실, 근거와 법에 의거한 진술, 해명 혹은 증언을 청취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행정처벌을 실시하기 전 고지서 혹은 행정처벌 증언청취고지서를 함께 통지한다.

제 12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조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결정을 실시할 경우 생산제한결정서 혹은 생산정지처리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 명기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생산제한결정서와 생산정지처리 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 (1) 오염물배출자의 기초상황에는 명칭 혹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신분증번호, 조직기구번호, 주소 및 법정대리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성명 등을 포함시킨다.
- (2) 위법사실, 증거, 생산제한 및 생산정지처리의 결정 근거
- (3)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의 시정방식과 기한
- (4) 오염물배출자가 이행해야 하는 해당 의무와 행정재심의 신청 혹은 행정소송제기의 절차와 기한
- (5) 환경보호주관부문의 명칭, 도장, 결정날짜

제 14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 결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7 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결정서를 오염물 배출자에게 송부한다.

제 15 조

생산제한은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본급 환경보호주관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치면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생산정지처리의 기한은 생산정지처리 결정서를 오염물배출자에게 송부한 날부터 생산정지 처리결정 해제 날까지이다.

제 16 조

오염물 배출자는 생산제한결정서 혹은 생산정지처리 결정서를 받은 후 즉시 정비하고 15 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정비방안을 결정서를 내린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정비방안에는 개정조치, 공정진척, 자금보장, 책임자 등 사항을 정해야 한다. 생산제한을 명령을 받은 오염물 배출자는 정비기간 동안 오염물 배출기준 혹은 중점 오염물 일일최고허용 배출총량규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할 수 없다. 환경 모니터링기술규범에 의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자격이 있는 환경모니터링기구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한다.

제 17 조

오염물 배출자가 정비 임무를 완수한 후 15 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회에 공개한 정비임무 완료상황과 정비정보를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결정을 내린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모니터링보고서, 정비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량, 수량, 주요상품의 생산량과 정비 전 상황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한다.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결정은 오염물배출자가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한 날부터 해제한다.

제 18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 결정을 자체적으로 중지한다.
 (1) 법에 따라 해지, 해산,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기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의해 법에 따라 정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 19 조

오염물배출자가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를 명령 받은 후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해당규정에 따라 오염물배출자가 이행한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조치 실시상황에 대하여 감독한다.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벌을 실시한다.

제 20 조

오염물 배출자의 생산제한, 생산정지처리 해제 후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해제일로부터 30 일내에 오염물 배출자에 대해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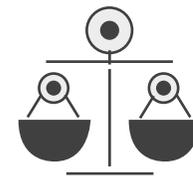
제 21 조

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설명한다.

제 22 조

본 방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0. 환경보호주관부문 일일연속처벌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일일연속처벌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일일연속처벌방법 실시》는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서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주생현 (周生賢)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연속처벌을 규범하고 실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업·사업기관과 기타생산업자(이하 오염물 배출자라고 칭함)에게 연속처벌을 실시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시킨다.

제 3 조

연속처벌의 실시는 교육과 처벌을 결합시킨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 오염물 배출자가 환경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연속처벌을 실시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결정과 위법행위에 관한 시정명령결정 등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2 장 적용범위

제 5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을 내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연속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가 혹은 지방규정의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 (2) 지하파이프, 수챗구멍, 주입 혹은 왜곡을 통해 모니터링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오염물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오염물 배출의 감독관리 방식을 회피하는 경우
- (3) 배출법률, 법규규정에서 금지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 (4) 위법으로 위험폐기물을 쏟아 버리는 경우
- (5) 기타 위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

제 6 조

지방성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요건에 따라 연속처벌의 위법행위 종류를 늘릴 수 있다.

제 3 장 실시순서

제 7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점검 과정 중 오염물 배출자가 위법 오염물을 배출을 적발한 경우 사실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결정을 내린다. 연속처벌결정은 전항(前項)규정의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후 진행한다.

제 8 조

현장에서 위법 오염물 배출을 인정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현장조사 시 오염물 배출자에게 위법행위 시정 결정서를 송부하고 위법 오염물 배출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제 9 조

위법행위 시정 결정서에 아래 사항을 명기한다.

- (1) 오염물 배출자의 기초상황에는 명칭 혹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신분증번호, 조지기구번호, 주소 및 법정대리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성명 등을 포함시킨다.
- (2) 환경 위법사실과 증거
- (3) 법률, 법규 혹은 규정의 구체적인 조항과 처리근거를 위반한 경우
- (4) 즉시 시정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 (5) 시정을 거부하면 연속처벌의 법률결과를 부담할 수도 있다.
- (6)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의 절차와 기한을 제기한다.
- (7) 환경보호주관부문의 명칭, 도장, 결정날짜

제 10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위법행위결정서를 송부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공개 방식으로 오염물 배출자의 위법 오염물배출 행위의 개선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제 11 조

오염물 배출자가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재검사를 받기 전 위법행위 시정 결정서를 내린 환경주관부문에 개선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 12 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재검사 시 오염물 배출자가 불법 오염물 배출행위에 대한 시정을 거부할 경우 연속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재검사 시 오염물 배출자가 위법 오염물 배출행위를 시정했거나 생산중지, 영업중지, 폐쇄한 경우 연속처벌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13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정거부로 지정한다.

- (1) 위법행위 시정결정서 송부 후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재검사 중 여전히 위법 오염물 배출 행위를 지속한 경우
- (2) 환경보호주관부문의 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 14 조

재검사 시 오염물 배출자가 위법 오염물 배출행위에 대한 시정을 거부한 자로 지정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본 방법 제 8 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위법행위 시정 결정서를 내리고 오염물 배출자에게 송부한다. 위법 오염물 배출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한다. 본 법의 제 10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자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 15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연속처벌을 실시할 경우 법률규정의 행정처벌순서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연속처벌 실시를 결정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결정서를 내려야 한다.

처벌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1) 오염물 배출자의 기본상황에는 명칭 혹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신분증번호, 조직기구번호, 주소, 법정대리인 혹은 주요책임자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처음 검사에서 환경 위법행위와 해당 행위의 기존 처벌결정, 시정을 거부한 위법사실과 증거
- (3) 연속처벌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과 근거
- (4) 연속처벌의 규칙결정에 따라 정해진 벌금액수
- (5) 연속처벌의 이행방식과 기한
- (6)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의 절차와 기한을 제기한다.
- (7) 환경보호주관부문의 명칭, 도장, 결정날짜

제 4 장 처벌방식

제 17 조

연속처벌의 처벌일수는 위법행위 시정 결정서를 오염물 배출자에게 송부한 날부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재검사를 실시하여 위법 오염물 배출행위를 적발한 날까지로 한다. 재검사 실시 시 여전히 시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일수는 누적하여 실시한다.

제 18 조

재검사 시 위법 오염물 배출 행위가 시정되고 환경보호주관부문이 다시 검사를 실시할 시 본 방법 제 5 조에 해당하는 위법상황이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 다시 처벌결정을 내린다. 연속처벌의 처벌주기에 의거하여 다시 계산한다. 연속처벌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제 19 조

연속처벌의 하루 벌금액수는 기존 처벌결정서에서 정한 처벌액수이다. 연속처벌 규칙결정의 처벌액수에 따라 기존 처벌결정서에서 정한 처벌액수에 처벌날짜를 곱한다.

제 5 장 부칙

제 20 조

경보호주관부문은 위법 오염물배출 행위에 대해 연속처벌에 의거하여 오염물 배출자에게 생산제한, 생산정지를 명하거나 차압, 압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기 조치들로 인해 오염물 배출자가 위법 오염물 배출 행위를 멈추는 경우 연속처벌을 다시 실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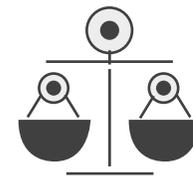
제 21 조

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설명한다.

제 22 조

본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환경보호주관부문 차압·압수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차압·압수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차압·압수방법 실시》는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서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주생현 (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차압·압수를 실시하고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
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이하 오염물 배출자로 칭함)가 법률법규정
을 위반하고 오염물을 배출하여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
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오염물 배출을 초래한 시설, 설
비에 대해 차압·압수를 실시하고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의 차압·압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 기관의 행정경비
예산에 포함시키고 동급의 재정부문이 보장한다.

제 2 장 적용범위

제 4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차압·압수를 실시한다.

- (1)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위험폐기물과 중금속을 함유한 오염물 혹은
영구성 유기오염물 등 유독유해물질 혹은 기타 유해물질을 위법으로 배출하고 처
리하는 경우
- (2) 식수원 1급보호구역, 자연보호핵심구역에 법률법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염
물을 배출하고 처리한 경우
- (3) 법률법규정을 따르지 않고 화학공업, 제약, 석화, 날염, 전기도금, 제지,
제혁 등 공업침전물을 배출한 경우
- (4) 지하파이프, 수챗구멍, 주입 혹은 왜곡을 통해 모니터링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오염물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오염물 배출의 감독관리 방식
을 회피하고 법률법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 (5) 중대한 환경 돌발사고 발생 후 요건에 따라 생산정지, 배출정지조치를 실시하
지 않고 법률법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 (6)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배출
행위

전항의 제 1 항, 2 항, 3 항, 6 항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
문은 차압·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거나 전항의 제 4
항, 5 항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차압·압수를 실시한
다.

제 5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오염을 일으킨 시설, 설비의 오염물 배출자에 대하여 차압·
압수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에 의거해 이미 시설, 설
비에 대하여 차압을 실시한 오염물 배출자에 대하여 다시 차압·압수를 실시할 수

없다.
이동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요건에 의해 배치된 시설, 설비는 현장에서 차압을 실시한다. 차압 시 시설, 설비의 제어장치 등 주요 부품 혹은 오염물 배출에 필요한 급수(供水), 전기공급, 공기공급 등의 스위치 밸브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제 6 조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련 환경보호법률법규에 따라 처벌을 실시하고 차압·압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1) 도시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위험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의 운영기관
- (2) 생산업자의 업무가 기본민생, 공공이익과 관련된 경우
- (3) 차압·압수의 실시가 생산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제 7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차압·압수를 실시할 경우 법에 따라 차압·압수결정, 차압·압수연기상황, 차압·압수결정의 해제 등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개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제 8 조

차압·압수의 실시 절차에는 증거수집조사, 심사허가, 결정, 집행, 송부, 해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차압·압수를 실시하기 전 증거수집 조사를 해야 한다.

차압·압수의 증거에는 현장조사기록, 조사문의기록, 환경모니터링보고, 시청자료, 증인의 증언, 기타 증명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차압·압수를 실시해야 할 경우 서면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 책임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 안전심의위원회기관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차압·압수 실시를 결정했을 경우 차압·압수 결정서와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차압·압수 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 (1) 오염물 배출자의 기초상황에는 명칭 혹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신분증번호, 조직기구번호, 주소 및 법정대리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성명 등을 포함시킨다.
- (2) 차압·압수의 근거와 기한
- (3) 차압·압수 시설, 설비의 명칭, 수량과 배치장소 등
- (4) 오염물 배출자가 이행해야 하는 해당 의무, 행정 제심의 신청 혹은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와 기한
- (5) 환경보호주관부문의 명칭, 도장, 결정날짜

제 12 조

차압·압수를 실시할 경우 아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두 명 이상의 행정집행의 권한이 있는 환경행정집행인원이 실시해야 하고 법 집행인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2) 오염물 배출자의 책임자 혹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한다. 현장에서 차압·압수를 실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부여 받은 권리, 구제 경로를 현장에서 알려주고 진술과 해명을 듣는다.

- (3) 현장기록을 작성하고 필요 시 현장사진을 찍는다. 현장기록의 내용에는 차압·압수를 실시한 시간과 장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4)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차압·압수시설, 설비의 목록을 작성한다. 오염물 배출자와 환경보호주관부문이 각각 보관한다. 제 3 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 3 자에게 동시에 전달한다. 법 집행요원은 상기 과정에서 현장촬영을 실시할 수 있다.
- (5) 현장기록과 차압·압수시설, 설비 목록은 오염물 배출자와 법 집행요원이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 (6) 압류스티커 부착 혹은 기타 방식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이미 차압·압수를 실시한 것을 명시한다.

제 13 조

상황이 긴급하여 현장에서 차압·압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실시 후 24 시간 이내에 비준 절차를 밟는다. 환경보호주관부문 책임자가 차압·압수가 불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즉시 중지한다.

제 14 조

차압·압수결정서는 현장에서 오염물배출 책임자 혹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령한다. 오염물배출 책임자 혹은 위탁을 받은 자는 서명 혹은 사인을 해야 하고 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차압·압수 실시 과정 중 오염물배출 책임자 혹은 위탁을 받은 자가 현장 출석을 거부하거나 사인, 도장을 거부하는 경우 환경행정법 집행 요원은 이를 밝히고 목격자를 현장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목격자와 환경행정법 집행요원이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 15 조

차압·압수의 기한은 30 일을 넘지 않는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본급 환경보호주관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30 일을 넘지 않는다.

법률, 법규 이외의 규정은 제외한다.

차압·압수 결정의 연장은 즉시 서면으로 오염물 배출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 16 조

오염물 배출자는 현장에서 차압한 시설, 설비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무단으로 압류스티커를 훼손하거나 차압상태를 변경하거나 차압된 시설,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차압된 시설, 설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압수기간 동안 시설, 설비의 보관비용은 환경보호주관 부문이 부담한다.

제 17 조

차압된 시설, 설비에 훼손이 가면 오염물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압수된 시설, 설비에 훼손이 가면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책임을 진다. 위탁을 받은 제 3 자로 인해 훼손이 가면 위탁을 맡긴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선납금을 지불한 후 위탁을 받은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오염물 배출자는 차압·압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차압·압수 결정을 실시한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신청해지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증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 19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접수 받은 날부터 차압·압수신청해지 날까지 5 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결정을 실시한다.

- (1) 법률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 배출 행위를 시정한 경우 차압·압수를 해제한다.

(2)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한 오염물 배출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차압·압수를 유지한다.

제 20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차압·압수를 실시 후 즉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차압·압수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 (1)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한 오염물 배출 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 혹은 처리결정을 실시하여 차압·압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 차압·압수기한이 만료된 경우
- (3) 재차압, 재압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 21 조

차압·압수조치가 해제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오염물 배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차압·압수결정이 해제된 날부터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해제결정을 송부해야 한다.

압수조치가 해제된 경우 오염물 배출자에게 통지하여 압수물품을 돌려줘야 한다. 통지할 수 없을 경우 공고를 내리고 오염물 배출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해 가야 한다.

압수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경매기관에 위탁하여 법에 따라 경매에 부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자금은 국고로 상납한다.

제 22 조

오염물 배출자가 환경오염범죄 혐의로 이미 공간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받은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차압·압수된 시설, 설비와 관련 법률문서, 목록을 법에 따라 이송한다.

제 23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차압 후의 시설,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봉인된 보관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자가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압류스티커를 훼손하고 차압상태를 변경하거나 차압된 시설, 설비를 숨기거나 이동, 판매, 사용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즉시 공간기관에 처리를 요청한다.

제 4 장 부칙

제 24 조

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설명한다.

제 25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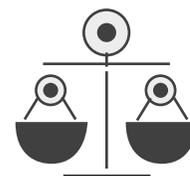
본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중문)



주중대한민국대사관

环境监察办法



环境监察办法

《环境监察办法》已于2012年7月4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9月1日起施行。

环境保护部部长

二〇一二年七月二十五日

主题词：环保 法规 环境监察 办法 令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加强和规范环境监察工作，加强环境监察队伍建设，提升环境监察效能，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等有关法律、法规，结合环境监察工作实际，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环境监察，是指环境保护主管部门依据环境保护法律、法规、规章和其他规范性文件实施的行政执法活动。

第三条 环境监察应当遵循以下原则：

- (一) 教育和惩戒相结合；
- (二) 严格执法和引导自觉守法相结合；

- (三) 证据确凿，程序合法，定性准确，处理恰当；
- (四) 公正、公开、高效。

第四条 环境保护部对全国环境监察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环境监察工作。

各级环境保护主管部门所属的环境监察机构（以下简称“环境监察机构”），负责具体实施环境监察工作。

第五条 环境监察机构对本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并接受上级环境监察机构的业务指导和监督。

各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对环境监察机构的领导，建立健全工作机制，并为环境监察机构提供必要的工作条件。

第六条 环境监察机构的主要任务包括：

- (一) 监督环境保护法律、法规、规章和其他规范性文件的执行；
- (二) 现场监督检查污染源的污染物排放情况、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环境保护行政许可执行情况、建设项目环境保护法律法规的执行情况等；
- (三) 现场监督检查自然保护区、畜禽养殖污染防治等生态和农村环境保护法律法规执行情况；
- (四) 具体负责排放污染物申报登记、排污费核定和征收；
- (五) 查处环境违法行为；
- (六) 查办、转办、督办对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投诉、举报，并按照环境保护主管部门确定的职责分工，具体负责环境污染和生态破坏纠纷的调解处理；
- (七) 参与突发环境事件的应急处置；
- (八) 对严重污染环境和破坏生态问题进行督查；
- (九) 依照职责，具体负责环境稽查工作；
- (十) 法律、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规定的其他职责。

第二章 环境监察机构和人员

第七条 各级环境监察机构可以命名为环境监察局。省级、设区的市级、县级环境监察机构，也可以分别以环境监察总队、环境监察支队、环境监察大队命名。县级环境监察机构的分支（派出）机构和乡镇级环境监察机构的名称，可以命名为环境监察中队或者环境监察所。

第八条 环境监察机构的设置和人员构成，应当根据本行政区域范围大小、经济社会发展水平、人口规模、污染源数量和分布、生态保护和环境执法任务量等因素科学确定。

第九条 环境监察机构的工作经费，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列入环境保护主管部门预算，由本级财政予以保障。

第十条 环境监察机构的办公用房、执法业务用房及执法车辆、调查取证器材等执法装备，应当符合国家环境监察标准化建设及验收要求。

环境监察机构的执法车辆应当喷涂统一的环境监察执法标识。

第十一条 录用环境监察机构的工作人员（以下简称“环境监察人员”），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的有关规定。

第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工作需要，制定环境监察培训五年规划和年度计划，组织开展分级分类培训。

设区的市级、县级环境监察机构的主要负责人和省级以上环境监察人员的岗位培训，由环境保护部统一组织。其他环境监察人员的岗位培训，由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

环境监察人员参加培训的情况，应当作为环境监察人员考核、任职的主要依据。

第十三条 从事现场执法工作的环境监察人员进行现场检查时，有权依法采取以下措施：

- （一）进入有关场所进行勘察、采样、监测、拍照、录音、录像、制作笔录；
- （二）查阅、复制相关资料；
- （三）约见、询问有关人员，要求说明相关事项，提供相关材料；
- （四）责令停止或者纠正违法行为；
- （五）适用行政处罚简易程序，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
- （六）法律、法规、规章规定的其他措施。

实施现场检查时，从事现场执法工作的环境监察人员不得少于两人，并出示《中国环境监察执法证》等行政执法证件，表明身份，说明执法事项。

第十四条 从事现场执法工作的环境监察人员，应当持有《中国环境监察执法证》。

对参加岗位培训，并经考试取得培训合格证书的环境监察人员，经核准后颁发《中国环境监察执法证》。《中国环境监察执法证》颁发、使用、管理的具体办法，由环境保护部另行制定。

第十五条 各级环境监察机构应当建立健全保密制度，完善保密措施，落实保密责任，指定专人管理保密的日常工作。

第十六条 环境监察人员应当严格遵守有关廉政纪律和要求。

第十七条 各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对环境监察人员的考核制度。

对工作表现突出、有显著成绩的环境监察人员，给予表彰和奖励。对在教育环境监察工作中违法违纪的环境监察人员，依法给予处分，可以暂扣、收回《中国环境监察执法证》；涉嫌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三章 环境监察工作

第十八条 环境监察机构应当根据本行政区域环境保护工作任务、污染源数量、类型、管理权限等，制定环境监察工作年度计划。

环境监察工作年度计划报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批准后实施，并抄送上一级环境监察机构。

第十九条 环境监察机构应当根据环境监察工作年度计划，组织现场检查。现场检查可以采取例行检查或者重点检查的方式进行。

第二十条 对排污者申报的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环境监察机构负责依法进行核定。

第二十一条 环境监察机构应当按照排污费征收标准和核定的污染物种类、数量，负责向排污者征收排污费。

对减缴、免缴、缓缴排污费的申请，环境监察机构应当依法审核。

第二十二条 违反环境保护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责令违法行为人改正或者限期改正，并依法实施行政处罚。

第二十三条 对违反环境保护法律、法规，严重污染环境或者造成重大社会影响的环境违法案件，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提出明确要求，督促有关部门限期办理，并向社会公开办理结果。

第二十四条 环境监察机构负责组织实施环境行政执法后督察，监督环境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的执行。

第二十五条 企业事业单位严重污染环境或者造成严重生态破坏的，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环境监察机构可以约谈单位负责人，督促其限期整改。

对未完成环境保护目标任务或者发生重大、特大突发环境事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环境监察机构可以约谈下级地方人民政府负责人，要求地方人民政府依法履行职责，落实整改措施，并可以提出改进工作的建议。

第二十六条 对依法受理的案件，属于本机关管辖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规定的时限和程序依法处理；属于环境保护主管部门管辖但不属于本机关管辖的，受理案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移送有管辖权的环境保护主管部门处理；不属于环境保护主管部门管辖的，受理案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移送有管辖权的机关处理。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与司法机关的配合和协作，并可以根据工作需要，联合其他部门共同执法。

第二十七条 相邻行政区域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相互通报环境监察执法信息，加强沟通、协调和配合。

同一区域、流域内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信息共享，开展联合检查和执法活动。

环境监察机构应当加强信息统计，并以专题报告、定期报告、统计报表等形式，向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和上级环境监察机构报告本行政区域的环境监察工作情况。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公开环境监察的有关信息。

第二十八条 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在环境监察工作中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稽查。

第二十九条 对环境监察工作中形成的污染源监察、建设项目检查、排放污染物申报登记、排污费征收、行政处罚等材料，应当及时进行整理，立卷归档。

第三十条 上级环境监察机构应当对下一级环境保护主管部门的环境监察工作进行年度考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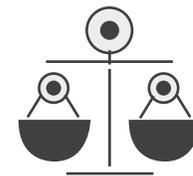
第四章 附则

第三十一条 环境保护主管部门所属的其他机构，可以按照环境保护主管部门确定的职责分工，参照本办法，具体实施其职责范围内的环境监察工作。

第三十二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

第三十三条 本办法自2012年9月1日起施行。《环境监理工作暂行办法》（〔91〕环监字第338号）、《环境监理工作制度（试行）》（环监〔1996〕888号）、《环境监理工作程序（试行）》（环监〔1996〕888号）、《环境监理政务公开制度》（环发〔1999〕15号）同时废止。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 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已于2014年12月15日由环境保护部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月1日起施行。

部长 周生贤

2014年12月19日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规范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措施，依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对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称排污者），责令采取限制生产、停产整治措施的，适用本办法。

第三条 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时，应当责令排污者改正或者限期改正违法行为，并依法实施行政处罚。

第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的，应当依法向社会公开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限制生产延期情况和解除限制生产、停产整治的日

期等相关信息。

第二章 适用范围

第五条 排污者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日最高允许排放总量控制指标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责令其采取限制生产措施。

第六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责令其采取停产整治措施：

- （一）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污染物，超过污染物排放标准的；
- （二）非法排放含重金属、持久性有机污染物等严重危害环境、损害人体健康的污染物超过污染物排放标准三倍以上的；
- （三）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年度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
- （四）被责令限制生产后仍然超过污染物排放标准排放污染物的；
- （五）因突发事件造成污染物排放超过排放标准或者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
-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七条 具备下列情形之一的排污者，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予以处罚，可以不予实施停产整治：

- （一）城镇污水处理、垃圾处理、危险废物处置等公共设施的运营单位；

- (二) 生产经营业务涉及基本民生、公共利益的；
- (三) 实施停产整治可能影响生产安全的。

第八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责令停业、关闭：

- (一) 两年内因排放含重金属、持久性有机污染物等有毒物质超过污染物排放标准受过两次以上行政处罚，又实施前列行为的；
- (二) 被责令停产整治后拒不停产或者擅自恢复生产的；
- (三) 停产整治决定解除后，跟踪检查发现又实施同一违法行为的；
- (四) 法律法规规定的其他严重环境违法情节的。

第三章 实施程序

第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前，应当做好调查取证工作。

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的证据包括现场检查笔录、调查询问笔录、环境监测报告、视听资料、证人证言和其他证明材料。

第十条 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前，应当书面报经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批准；案情重大或者社会影响较大的，应当经环境保护主管部门案件审查委员会集体审议决定。

第十一条 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前，应当告知排污者有关事实、依据及其依法享有的陈述、申辩或者要求举行听证的权利；就同

一违法行为进行行政处罚的，可以在行政处罚事先告知书或者行政处罚听证告知书中一并告知。

第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的，应当制作责令限制生产决定书或者责令停产整治决定书，也可以在行政处罚决定书中载明。

第十三条 责令限制生产决定书和责令停产整治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 (一) 排污者的基本情况，包括名称或者姓名、营业执照号码或者居民身份证号码、组织机构代码、地址以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姓名等；
- (二) 违法事实、证据，以及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的依据；
- (三) 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的改正方式、期限；
- (四) 排污者应当履行的相关义务及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 (五) 环境保护主管部门的名称、印章和决定日期。

第十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之日起七个工作日内将决定书送达排污者。

第十五条 限制生产一般不超过三个月；情况复杂的，经本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但延长期限不得超过三个月。

停产整治的期限，自责令停产整治决定书送达排污者之日起，至停产整治决定解除之日止。

第十六条 排污者应当在收到责令限制生产决定书或者责令停产整治决定书后立即整改，并在十五个工作日内将整改方案报作出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向社会公开。整改方案应当确定改正措施、工程进度、资金保障和责任人员等事项。

被限制生产的排污者在整改期间，不得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重点污染物日最高允许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并按照环境监测技术规范进行监测或者委托有条件的环境监测机构开展监测，保存监测记录。

第十七条 排污者完成整改任务的，应当在十五个工作日内将整改任务完成情况和整改信息社会公开情况，报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提交监测报告以及整改期间生产用电量、用水量、主要产品产量与整改前的对比情况等材料。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自排污者报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之日起解除。

第十八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自行终止：
（一）依法被撤销、解散、宣告破产或者因其他原因终止营业的；
（二）被有批准权的人民政府依法责令停业、关闭的。

第十九条 排污者被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后，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相关规定对排污者履行限制生产、停产整治措施的情况实施后督察，并依法进行处理或者处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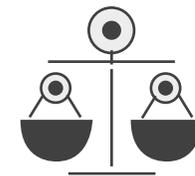
第二十条 排污者解除限制生产、停产整治后，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解除之日起三十日内对排污者进行跟踪检查。

第二十二条 本办法自 2015 年 1 月 1 日起施行。

第四章 附 则

第二十一条 本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解释。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 按日连续处罚办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 按日连续处罚办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已于2014年12月15日由环境保护部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月1日起施行。

部长 周生贤

2014年12月19日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规范实施按日连续处罚，依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等法律，制定本办法。

第二条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对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称排污者）实施按日连续处罚的，适用本办法。

第三条 实施按日连续处罚，应当坚持教育与处罚相结合的原则，引导和督促排污者及时改正环境违法行为。

第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应当依法向社会公开行政处罚决定和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等相关信息。

第二章 适用范围

第五条 排污者有下列行为之一，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拒不改正的，依法作出罚款处罚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实施按日连续处罚：

- （一）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
- （二）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污染物的；
- （三）排放法律、法规规定禁止排放的污染物的；
- （四）违法倾倒危险废物的；
- （五）其他违法排放污染物行为。

第六条 地方性法规可以根据环境保护的实际需要，增加按日连续处罚的违法行为的种类。

第三章 实施程序

第七条 环境保护主管部门检查发现排污者违法排放污染物的，应当进行调查取证，并依法作出行政处罚决定。

按日连续处罚决定应当在前款规定的行政处罚决定之后作出。

第八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当场认定违法排放污染物的，应当在现场调查时向排污者送达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责令立即停止违法排放污染物行为。

需要通过环境监测认定违法排放污染物的，环境监测机构应当按照监测技术规范要求进行监测。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取得环境监测报告后三个工作日内

向排污者送达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责令立即停止违法排放污染物行为。

第九条 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 （一）排污者的基本情况，包括名称或者姓名、营业执照号码或者居民身份证号码、组织机构代码、地址以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姓名等；
- （二）环境违法事实和证据；
- （三）违反法律、法规或者规章的具体条款和处理依据；
- （四）责令立即改正的具体内容；
- （五）拒不改正可能承担按日连续处罚的法律后果；
- （六）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 （七）环境保护主管部门的名称、印章和决定日期。

第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送达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之日起三十日内，以暗查方式组织对排污者违法排放污染物行为的改正情况实施复查。

第十一条 排污者在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复查前，可以向作出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改正情况，并附具相关证明材料。

第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时发现排污者拒不改正违法排放污染物行为的，可以对其实施按日连续处罚。

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时发现排污者已经改正违法排放污染物行为或者已经停产、停业、关闭的，不启动按日连续处罚。

第十三条 排污者具有下列情形之一的，认定为拒不改正：

- （一）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送达后，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发现仍在继续违法排放污染物的；
- （二）拒绝、阻挠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复查的。

第十四条 复查时排污者被认定为拒不改正违法排放污染物行为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本办法第八条的规定再次作出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并送达排污者，责令立即停止违法排放污染物行为，并应当依照本办法第十条、第十二条的规定对排污者再次进行复查。

第十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应当符合法律规定的行政处罚程序。

第十六条 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实施按日连续处罚的，应当依法作出处罚决定书。

处罚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 （一）排污者的基本情况，包括名称或者姓名、营业执照号码或者居民身份证号码、组织机构代码、地址以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姓名等；
- （二）初次检查发现的环境违法行为及该行为的原处罚决定、拒不改正的违法事实和证据；
- （三）按日连续处罚的起止时间和依据；
- （四）按照按日连续处罚规则决定的罚款数额；
- （五）按日连续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 （六）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 （七）环境保护主管部门名称、印章和决定日期。

第四章 计罚方式

第十七条 按日连续处罚的计罚日数为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送达排污

者之日的次日起，至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发现违法排放污染物行为之日止。再次复查仍拒不改正的，计罚日数累计执行。

第十八条 再次复查时违法排放污染物行为已经改正，环境保护主管部门在之后的检查中又发现排污者有本办法第五条规定的情形的，应当重新作出处罚决定，按日连续处罚的计罚周期重新起算。按日连续处罚次数不受限制。

第十九条 按日连续处罚每日的罚款数额，为原处罚决定书确定的罚款数额。

按照按日连续处罚规则确定的罚款数额，为原处罚决定书确定的罚款数额乘以计罚日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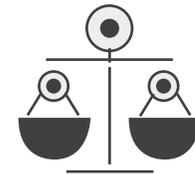
第五章 附 则

第二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针对违法排放污染物行为实施按日连续处罚的，可以同时适用责令排污者限制生产、停产整治或者查封、扣押等措施；因采取上述措施使排污者停止违法排污行为的，不再实施按日连续处罚。

第二十一条 本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办法自 2015 年 1 月 1 日起施行。

环境保护主管部门 实施查封、扣押办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已于2014年12月15日由环境保护部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月1日起施行。

部长 周生贤

2014年12月19日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规范实施查封、扣押，依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等法律，制定本办法。

第二条 对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称排污者）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污染，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对造成污染物排放的设施、设备实施查封、扣押的，适用本办法。

第三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所需经费，应当列入本机关的行政经费预算，由同级财政予以保障。

第二章 适用范围

第四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实施查封、扣押：

（一）违法排放、倾倒或者处置含传染病病原体的废物、危险废物、含重金属污染物或者持久性有机污染物等有毒物质或者其他有害物质的；

（二）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自然保护区核心区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倾倒、处置污染物的；

（三）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倾倒化工、制药、石化、印染、电镀、造纸、制革等工业污泥的；

（四）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的；

（五）较大、重大和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发生后，未按照要求执行停产、停排措施，继续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的；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污染的违法排污行为。

有前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六项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实施查封、扣押；已造成严重污染或者有前款第四项、第五项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实施查封、扣押。

第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查封、扣押排污者造成污染物排放的设施、设备，应当符合有关法律的规定。不得重复查封、扣押排污者已被依法查封的设施、设备。

对不易移动的或者有特殊存放要求的设施、设备，应当就地查封。查封时，可以在该设施、设备的控制装置等关键部件或者造成污染物排放所需供水、供电、供气等开关阀门张贴封条。

第六条 具备下列情形之一的排污者，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污染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予以处罚，可以不予实施查封、扣押：

- (一) 城镇污水处理、垃圾处理、危险废物处置等公共设施的运营单位；
- (二) 生产经营业务涉及基本民生、公共利益的；
- (三) 实施查封、扣押可能影响生产安全的。

第七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的，应当依法向社会公开查封、扣押决定，查封、扣押延期情况和解除查封、扣押决定等相关信息。

第三章 实施程序

第八条 实施查封、扣押的程序包括调查取证、审批、决定、执行、送达、解除。

第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前，应当做好调查取证工作。

查封、扣押的证据包括现场检查笔录、调查询问笔录、环境监测报告、视听资料、证人证言和其他证明材料。

第十条 需要实施查封、扣押的，应当书面报经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批准；案情重大或者社会影响较大的，应当经环境保护主管部门案件审查委员会集体审议决定。

第十一条 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实施查封、扣押的，应当制作查封、扣押决定书和清单。

查封、扣押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 (一) 排污者的基本情况，包括名称或者姓名、营业执照号码或者居民身份证号码、组织机构代码、地址以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姓名等；
- (二) 查封、扣押的依据和期限；
- (三) 查封、扣押设施、设备的名称、数量和存放地点等；
- (四) 排污者应当履行的相关义务及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

和期限；

- (五) 环境保护主管部门的名称、印章和决定日期。

第十二条 实施查封、扣押应当符合下列要求：

(一) 由两名以上具有行政执法资格的环境行政执法人员实施，并出示执法身份证件；

(二) 通知排污者的负责人或者受托人到场，当场告知实施查封、扣押的依据以及依法享有的权利、救济途径，并听取其陈述和申辩；

(三) 制作现场笔录，必要时可以进行现场拍摄。现场笔录的内容应当包括查封、扣押实施的起止时间和地点等；

(四) 当场清点并制作查封、扣押设施、设备清单，由排污者和环境保护主管部门分别收执。委托第三人保管的，应同时交第三人收执。执法人员可以对上述过程进行现场拍摄；

(五) 现场笔录和查封、扣押设施、设备清单由排污者和执法人员签名或者盖章；

- (六) 张贴封条或者采取其他方式，明示环境保护主管部门已实施查封、扣押。

第十三条 情况紧急，需要当场实施查封、扣押的，应当在实施后二十四小时内补办批准手续。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认为不需要实施查封、扣押的，应当立即解除。

第十四条 查封、扣押决定书应当当场交付排污者负责人或者受托人签收。排污者负责人或者受托人应当签名或者盖章，注明日期。

实施查封、扣押过程中，排污者负责人或者受托人拒不到场或者拒绝签名、盖章的，环境行政执法人员应当予以注明，并可以邀请见证人到场，由见证人和环境行政执法人员签名或者盖章。

第十五条 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三十日；情况复杂的，经本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但延长期限不得超过三十日。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延长查封、扣押的决定应当及时书面告知排污者，并说明理由。

第十六条 对就地查封的设施、设备，排污者应当妥善保管，不得擅自损毁封条、变更查封状态或者启用已查封的设施、设备。

对扣押的设施、设备，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妥善保管，也可以委托第三人保管。扣押期间设施、设备的保管费用由环境保护主管部门承担。

第十七条 查封的设施、设备造成损失的，由排污者承担。扣押的设施、设备造成损失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承担；因受委托第三人原因造成损失的，委托的环境保护主管部门先行赔付后，可以向受委托第三人追偿。

第十八条 排污者在查封、扣押期限届满前，可以向决定实施查封、扣押的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解除申请，并附具相关证明材料。

第十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收到解除查封、扣押申请之日起五个工作日内，组织核查，并根据核查结果分别作出如下决定：

- (一) 确已改正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行为的，解除查封、扣押；
- (二) 未改正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行为的，维持查封、扣押。

第二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后，应当及时查清事实，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立即作出解除查封、扣押决定：

- (一) 对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行为已经作出行政处罚或者处理决定，不再需要实施查封、扣押的；
- (二) 查封、扣押期限已经届满的；

(三) 其他不再需要实施查封、扣押的情形。

第二十一条 查封、扣押措施被解除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立即通知排污者，并自解除查封、扣押决定作出之日起三个工作日内送达解除决定。

扣押措施被解除的，还应当通知排污者领回扣押物；无法通知的，应当进行公告，排污者应当自招领公告发布之日起六十日内领回；逾期未领回的，所造成的损失由排污者自行承担。

扣押物无法返还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委托拍卖机构依法拍卖或者变卖，所得款项上缴国库。

第二十二条 排污者涉嫌环境污染犯罪已由公安机关立案侦查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移送查封、扣押的设施、设备及有关法律文书、清单。

第二十三条 环境保护主管部门对查封后的设施、设备应当定期检视其封存情况。

排污者阻碍执法、擅自损毁封条、变更查封状态或者隐藏、转移、变卖、启用已查封的设施、设备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等法律法规及时提请公安机关依法处理。

第四章 附 则

第二十四条 本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解释。

第二十五条 本办法自 2015 年 1 月 1 日起施行。

중국 환경법 위반시 처벌규정집

감수자 : 주중대한민국 대사관 정복영 환경관

편집 및 번역 : 하연주

주소 : 中国北京市朝阳区第三使馆区东方东路 20
号 (邮政编码 100600),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86-8531-0837

이메일 : pigpig@korea.kr